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25회 임시회(2018.10.2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**복 지 도 시 위 원 회**

전문위원      신 준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8-84
----------	-------

2018. 10. 29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주택과)
- 나. 제출일자 : 2018. 10. 15.(월)
- 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(금)

## 2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
## 3. 개정이유

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단지 내 수목 식재를 확산하고 미세먼지 저감,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자연이 숨 쉬는 맑은 마포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(안 제4조제1항제 2호타목)
  - 수목 식재 구비 지원 비율 : 60%
  - 자치구 분담률 : 공동주택 분담률 = 60:40
- 나. [별표1]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오류부분 정비(안 별표1)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나. 입법예고 (2018. 9. 13.~2018. 10. 4.) : 제출된 의견 없음.

다. 기타

- 1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## 6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수목 식재 비용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단지 내 고사된 수목을 정리하고 식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### 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

가. 안 제4조제1항제2호타목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수목 식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
나. 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지원 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항목이 오류 작성되어 해당 조문 사업범위에 맞게 수정하였음.

### ○ 검토의견은

-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음.

- 지원대상 범위에 수목식재를 포함하려는 것은 '공기청정숲 조성 4개년 계획'에 따라 민간분야 공기청정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물에 수목의 다층 식재로 녹지량을 확충하려고 추진하는 것임.
- 수목식재 지원은 유희부지 및 법정의무조경 범위 외 대상지를 발굴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 보이나, 공동주택의 공개공지 추가 확보 및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지원은 녹지량과 녹시율을 높이기 보다는 기존 식재된 수목의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될 것으로 사료됨.
-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수목식재 지원에 대한 사례는 없으며, 인천광역시 서구, 연수구, 부평구, 계양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.
- 하지만, 선제적 인식전환 차원의 행정지원으로서 주민이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, 조세공평주의에 근거,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시민들이 동일한 행정지원을 받도록 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임.
- 따라서, 행정지원의 공공성 확보 차원의 방법을 계획하여 공익과 관계되는 부분에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수목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단지 개방화를 조건화하며, 공익 성격이 강한 도로에 한정하여 가로수 식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실천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[관 계 법 령]

###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제85조(관리비용의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[참 고 사 항]

###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」

**제3조(지원제외)**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조례 제4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
#### 1.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

2.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
3.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
4.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
5.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
6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
7.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결정한 사업